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160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5년 4월 일 (제339회) |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김인수 의원 등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15년 4월 일 |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수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60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15년 4월 일

발 의 자 : 김인수·이양섭·김학철·박우양·
이의영·황규철·김봉희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- 도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(안 제8조)
-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3조제2항과 「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」 제13조제2항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함(부칙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2항과 「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」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조 ~ 제7조(생 략)</p> 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.</u></p> | <p>제1조 ~ 제7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|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